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16.1.13.] [국토교통부령 제278호, 2016.1.13.,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앙건축위원회 심의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심의 처리기간, 심의 서류 보존기간 등을 정하고, 건축편의 도모 등을 위하여 용도변경 및 건축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는 한편, 착공신고서에 현장배치 기술자 현황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앙건축위원회 운영 효율성 확대(안 제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항 신설)

중앙건축위원회는 심의 등의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마치도록 하되,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 관련 서류는 2년간 보존하도록 하며, 중앙건축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건축정책업무 담당 과장을 간사로 두도록 함.

나. 건축허가 사전결정 신청 서류 간소화(안 제4조제5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경우 사전결정 단계에서 세부적인 검토가 불필요한 에너지절약계획서,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서 및 조경계획은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

다. 건축신고 및 용도변경 신청 시 제출 서류 간소화(안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12조의2제1항제1호)

실내마감도를 건축신고 제출서류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 시 허가권자가 건축물대장이나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용도변경 전 평면도를 제출서류에서 제외함.

라. 착공신고서에 현장배치 기술자 현황 기재(별지 제13호서식)

착공신고서에 현장 배치 건설기술자의 성명, 자격증 및 자격번호를 기재하도록 하여 건설기술자의 무분별한 현장 중복 배치 등을 방지함.

<국토교통부 제공>

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278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중앙건축위원회는 심의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다만, 심의요청서 보완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2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 관련 서류는 심의등의 완료 후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중앙건축위원회에 회의록 작성 등 중앙건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의 건축정책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별표 2 중 건축계획서(에너지절약계획서,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서는 제외한다) 및 배치도(조경계획은 제외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입면도·단면도 및 실내마감도"를 "입면도 및 단면도"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1호 중 "평면도"를 "평면도(허가권자가 건축물대장이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통하여 평면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변경 전 평면도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7일"을 "3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의2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세움터 (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착공신고서

•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2면중 제1면)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일
신고인	건축주			
	전화번호			
	주소			
대지위치			지번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자	
착공예정일자			준공예정일자	
① 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도급계약일자		도급금액 원	
② 공사시공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도급계약일자	
	회사명		도급금액 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현장 배치 건설기술자	성명 자격증	자격번호	
③ 공사감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도급계약일자		도급금액 원	
④ 건축물 석면 함유 유무		☐ 천장재 ☐ 단열재 ☐ 지붕재 ☐ 보온재 ☐ 기타 ☐ 해당 없음		
⑤ 관계 전문기술자	분야	자격증	자격번호	주소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건축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신고인(건축주)

五

고민

은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안내					
첨부서류	1.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3.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착공신고 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건축법」 제21조제1항	· 「건축법」 제11조·제14조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건축법」 제11조제7항·제111조제1호	1. 허가를 받은 날 또는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됩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에 착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작성방법					
1. ① ~ ③: 여러 명인 경우 ○○○ 외 ○명으로 적으며, "외 ○명"의 현충도 제출합니다. 2. ④ 중 건설기술자: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하는 건설기술자를 적습니다. 3. ⑤: 「건축법」 제67조에 따라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에 대한 협력을 받은 관계 전문기술자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접수	검토	결재	신고필증 작성	발급
< 신고인 >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시·군·구 건축허가(신고)부서 >			< 신고인 >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리보고서

• 공사감리보고서는 사용승인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3면 중 제1면)

신청구분	[] 감리중간보고	[] 감리완료보고
허가번호	허가일자	
대지위치	지번	
구분	건축공정	통명칭 및 번호
중간보고	[] 기초공사 철근배근 완료	
	[] 지붕슬래브 철근배근 완료	
	[] (층)바닥슬래브 철근배근 완료 (철골조의 경우 주요구조부 조립을 완료)	
	[] 거푸집 또는 주춧돌 설치 완료	
완료보고	공사감리기간 ~	
	공사완료일자	
공사감리자 • 관계전문 기술자 확인 및 의견	확인자	의견
	() 분야 (서명 또는 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공사감리자) (서명 또는 인)	

「건축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감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210mm×297mm[택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면 중 제2면)

구 분	조 사 내 용	「건축법」(조례)기준	완공 후 현황
현장 조사	대지 및 도로	대지의 인전조치 등	제40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토지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제41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대지안의 조경	()% 이상 ()% []해당없음
		건축선 지정	제46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제47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구조내력	철골구조의 품질기준	제48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피난시설	직통계단의 설치	제4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피난 · 특별피난 · 옥외피난계단의 설치	제4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설치	제4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건축물 바깥쪽에서의 출구설치	제4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옥상광장의 설치	제50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방화구획	제4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계단설치기준 및 구조	제4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거실의 반자 · 채광 · 환기	제4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거실의 바닥	제4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경계 및 칸막이벽 구조	제4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제4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내화구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제50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대규모건축물의 방화벽 등	제50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건축재료	건축물의 마감재료	제52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복합자재의 품질기준	제52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지하층	지하층 구조	제53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용도제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건폐율 용적률	건폐율	()% 이하 []적합 []부적합 ()%
		용적률	()% 이하 []적합 []부적합 ()%
	대지안의 금지	건축선으로부터 이격거리	제58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제58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높이제한	가로구역별 및 도로에 의한 높이 제한	제60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일조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제61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210mm×297mm[택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면 중 제3면)

구 분		조 사 내 용	「건축법」(조례)기준	완공 후 현황		
현장 조사	건축설비	승용승강기의 설치	제64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승용승강기의 구조	제64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제64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구조	제64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배연설비의 설치	제4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강제배수시설의 설치	제62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온돌 및 난방설비의 설치	제62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열손실방지 조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에너지 절약계획서 이행 여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도시설계	지구단위계획에의 적합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부터 제55조 까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공개공지의 확보		()% 이상	()%	[]해당없음		
장애인 편의시설		관계법령에서 의무화된 시설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그 밖의 사항						
종합의견						

유의사항

• 중간검사는 그 검사 당시의 공사부분까지의 현황을 적습니다.

210mm×297mm[택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

건축공사 건축사보 배치 현황 제출

(앞쪽)

사 업 개 요	공사종류				공사기간		
	사업개요	(총공사비) 억원			사업규모		
	시공자	(회 사 명)			(대 표 자)		
	감리자	(건축사) (건축사사무소명)			(건축사 자격번호) (대표자)		
		현장소재지					
	계약금액				계약기간		
배 치 확 인	사업명	(감리구분)					
	소속회사	(회 사 명) (대 표 자)					
	성명	생년월일	배치기간 (예정)	자격구분 (자격종류)	공사 종류	비고 (경력 적합 여부)	
			-		건축	[]적합 []부적합	
			-		토목	[]적합 []부적합	
			-		전기	[]적합 []부적합	
			-		기계	[]적합 []부적합	
첼 수 확 인	사업명				사업기간		
	소속회사	(회 사 명) (대 표 자)					
	첼수일	성명	생년월일	첼수사유 (교체/완료)	계획공정기간 (배치예정기간)	비고	
[] 변 경	변경일	성명	생년월일	분야	당초	변경(정정)내용	
					(이미 통보한 내용)	(변경, 정정 통보한 내용)	
[] 정 정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건축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건축사보 배치현황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공사감리자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작성요령

1. "사업개요"란의 "공사종류" 및 "사업규모" 기재 예시
- 공사종류: 판매시설, 사업규모: 연면적 ()㎡, 층수 ()층, 등수 ()등
2. "변경" 통보 시에는 용역명칭과 계약변경(건축사보 변경 내용을 포함한다) 내용을 기재합니다.
3. "기간"은 반드시 "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4. 감리구분은 "건축공사 상주감리"로 기재하고, 건축사보는 상주하는 건축사보만 기입합니다.
6. "자격구분"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계 자격 취득자는 기술계 자격 취득자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자격자는 직부분야 등급을,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는 건축사보로 선별 기재하고, "자격종류"는 자격취득 종류(예: 건축기사 1급, 건축사예비시험 합격)를 기재합니다.
6. "철수사유"는 건축사보가 배치계획에 의한 계획공정 완료시점까지 근무하지 아니하고 철수하였을 때에는 "교체"로 기재하고, 퇴직, 입대, 이민, 사망, 3개월 이상의 공사 중단, 3개월 이상의 요양으로 인하여 철수하였을 때에는 "완료"로 기재합니다.
7. "변경 및 정정사항"은 배치 또는 철수 확인 사항의 각 항목 중 이미 통보한 내용에 대하여 건축사보의 교체 등 변경이 있는 경우, 통보한 내용 중에 오류 또는 변경사항 등을 정정 통보할 경우에 기재합니다.

210mm×297mm〔박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알뜰)

건축주

대지위치	지번
허가번호	허가일자
조사/검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조사/검사일자	설계일자

「건축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분	조 사 내 용	「건축법」 (조례)기준	완공 후 현황
현장 조사	대지 및 도로	대지의 안전조치 등	제40조 []일치 []불일치 []해당없음
		토지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제41조 []일치 []불일치 []해당없음
		대지안의 조경	()% 이상 ()% []해당없음
		건축선 지정	제46조 []일치 []불일치 []해당없음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제47조 []일치 []불일치 []해당없음
	피난시설	직통계단의 설치	제49조 []일치 []불일치 []해당없음
		피난·특별피난·옥외피난계단의 설치	제49조 []일치 []불일치 []해당없음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설치	제49조 []일치 []불일치 []해당없음
		건축물 바깥쪽에서의 출구설치	제49조 []일치 []불일치 []해당없음
		옥상광장의 설치	제49조 []일치 []불일치 []해당없음
		방화구획	제49조 []일치 []불일치 []해당없음
		계단설치기준 및 구조	제49조 []일치 []불일치 []해당없음
		거실의 반자·채광·환기	제49조 []일치 []불일치 []해당없음
		거실의 바닥	제49조 []일치 []불일치 []해당없음
		경계 및 칸막이벽 구조	제49조 []일치 []불일치 []해당없음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제49조 []일치 []불일치 []해당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뒷쪽)

구 분		조 사 내 용	「건축법」(조례)기준	완공 후 현황			
현장 조사	내 화구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제50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없음	
		대규모건축물의 방화벽 등	제50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없음	
	건축재료	건축물의 내장재료	제52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없음	
	지하층	지하층 구조	제53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없음	
	용도제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없음	
	건폐율 용적률	건폐율	()% 이하	()%			
		용적률	()% 이하	()%			
	대지안의 금지	건축선으로부터 이격거리	제58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없음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제58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없음	
	높이제한	가로구역별 및 도로에 의한 높이제한	제60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없음	
		일조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제61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없음	
	건축설비	승용승강기의 설치	제64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없음	
		승용승강기의 구조	제64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없음	
		비상승용승강기의 설치	제64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없음	
		비상승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구조	제64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없음	
		배연설비의 설치	제49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없음	
		강제배수시설의 설치	제62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없음	
		급수시설	제62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없음	
		온돌 및 난방설비의 설치	제62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없음	
		열손실방지 조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없음	
		에너지 절약계획서 이행 여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없음	
		도시설계	지구단위계획에의 적합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부터 제54조까지	[] 일치	[] 불일치	[] 해당없음
			공개공지의 확보	()% 이상	()%	[] 해당없음	
장애인 편의시설	관계법령에서 의무화된 시설			[] 일치	[] 불일치	[] 해당없음	
그 밖의 사항							
종합의견							

210mm×297mm[택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의3서식]

건축물의 유지·관리 []정기 []수시 점검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3면 중 제1면)

점검 항목	관련 규정	점검항목	설계도서와의 적합 여부			현행 기준과의 비교·검토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필요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대지	「건축법」 제40조	대지의 안전 등	[]적합	[]개선 필요	[]해당 없음	[]개선 필요	[]해당 없음
	「건축법」 제42조	대지의 조경	[]적합	[]개선 필요	[]해당 없음	[]개선 필요	[]해당 없음
	「건축법」 제43조	공개 공지 등의 확보	[]적합	[]개선 필요	[]해당 없음	[]개선 필요	[]해당 없음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적합	[]개선 필요	[]해당 없음	[]개선 필요	[]해당 없음
	「건축법」 제47조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적합	[]개선 필요	[]해당 없음	[]개선 필요	[]해당 없음
높이 및 형태	「건축법」 제55조	건폐율	[]유지	[]변경	[]해당 없음	[]개선 필요	[]해당 없음
	「건축법」 제56조	용적률	[]유지	[]변경	[]해당 없음	[]개선 필요	[]해당 없음
	「건축법」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	[]적합	[]개선 필요	[]해당 없음	[]개선 필요	[]해당 없음
	「건축법」 제60조	높이 제한	[]적합	[]개선 필요	[]해당 없음	[]개선 필요	[]해당 없음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적합	[]개선 필요	[]해당 없음	[]개선 필요	[]해당 없음
	「건축법」 제55조부터 제61조까지	외부형태의 원형 유지	[]유지	[]변경	[]해당 없음	[]개선 필요	[]해당 없음
	구조 안전	「건축법」 제48조	구조 내력 등	[]유지	[]변경	[]해당 없음	[]개선 필요
화재 안전	「건축법」 제49조	복도·계단·출입구	[]적합	[]개선 필요	[]해당 없음	[]개선 필요	[]해당 없음
		옥상광장	[]적합	[]개선 필요	[]해당 없음	[]개선 필요	[]해당 없음
		방화구획	[]적합	[]개선 필요	[]해당 없음	[]개선 필요	[]해당 없음
		경계벽·칸막이벽	[]적합	[]개선 필요	[]해당 없음	[]개선 필요	[]해당 없음
		그 밖의 피난시설	[]적합	[]개선 필요	[]해당 없음	[]개선 필요	[]해당 없음

210mm×297mm[특상지(80g/㎡) 또는 중급지(80g/㎡)]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3서식]
 제 [] 이 는 해당 하는 곳에 표시 합니다.

(3면 중 제2면)

점검항목	관련 규정	점검항목	설계도서와의 적합 여부			현행 기준과의 비교 · 검토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필요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화재 안전	「건축법」 제50조	내화구조	[]적합	[]개선 필요	[]해당 없음	[]개선 필요	[]해당 없음
		방화벽	[]적합	[]개선 필요	[]해당 없음	[]개선 필요	[]해당 없음
	「건축법」 제51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적합	[]개선 필요	[]해당 없음	[]개선 필요	[]해당 없음
	「건축법」 제52조	내부 마감 재료	[]적합	[]개선 필요	[]해당 없음	[]개선 필요	[]해당 없음
		외벽 마감 재료	[]적합	[]개선 필요	[]해당 없음	[]개선 필요	[]해당 없음
	「건축법」 제53조	지하층	[]적합	[]개선 필요	[]해당 없음	[]개선 필요	[]해당 없음
건축 설비	「건축법」 제62조	급수설비	[]적합	[]개선 필요	[]해당 없음	[]개선 필요	[]해당 없음
		배수설비	[]적합	[]개선 필요	[]해당 없음	[]개선 필요	[]해당 없음
		냉방설비	[]적합	[]개선 필요	[]해당 없음	[]개선 필요	[]해당 없음
		난방설비	[]적합	[]개선 필요	[]해당 없음	[]개선 필요	[]해당 없음
		환기설비	[]적합	[]개선 필요	[]해당 없음	[]개선 필요	[]해당 없음
		피뢰설비	[]적합	[]개선 필요	[]해당 없음	[]개선 필요	[]해당 없음
		방송수신 설비	[]적합	[]개선 필요	[]해당 없음	[]개선 필요	[]해당 없음
		전기설비	[]적합	[]개선 필요	[]해당 없음	[]개선 필요	[]해당 없음
	「건축법」 제64조	승강기	[]적합	[]개선 필요	[]해당 없음	[]개선 필요	[]해당 없음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등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열손실 방지	[]적합	[]개선 필요	[]해당 없음	[]개선 필요	[]해당 없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	[]인증	[]미인증	[]해당 없음	[]개선 필요	[]해당 없음
	「건축법」 제65조의2	지능형건축물 인증	[]인증	[]미인증	[]해당 없음	[]개선 필요	[]해당 없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인증	[]미인증	[]해당 없음	[]개선 필요	[]해당 없음
장애인 편의시설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적합	[]개선 필요	[]해당 없음	[]개선 필요	[]해당 없음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3서식]

(3면 중 제3면)

주요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안전 강화			
	에너지 절감			
	그 밖의 방안 (수명연장 등)			
종합의견				
년 월 일				
유지 · 관리 점검자 (서명 또는 인)				
* 참고사항(최종 사용승인 시 건축관계자 작성)				
설 계 자	성 명		전 화 번 호	
	사무소명			
공 사 시 공 자	성 명		전 화 번 호	
	회 사 명			
공 사 감 리 자	성 명		전 화 번 호	
	사무소명			
작성방법				
1. '설계도서와의 적합 여부'의 항목이 '적합', '개선 필요', '해당 없음'으로, '현행 기준과의 비교·검토'의 항목이 '개선 필요', '해당 없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체크 또는 작성합니다. 가. '적합', '개선 필요' 항목은 해당 건축물이 최종 사용승인일 시점의 설계도서와 적합한지를 점검하여 체크하고, 기존 항목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 없음'에 체크합니다. 나. '개선 필요', '해당 없음' 항목은 해당 건축물이 점검일자 시점의 규정 및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점검하여 건축물의 안전 및 성능저하가 우려되거나, 성능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선 필요'에 체크하고, 기존 항목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는 '해당 없음'에 체크합니다. 다. 각 점검항목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은 '설계도서와의 적합 여부' 및 '현행 기준과의 비교·검토'에 체크한 내용을 고려하여 점검자가 건축물의 쾌적성, 성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간략하게 적습니다(단순히 현행 기준 충족을 위한 내용은 적지 않습니다). 2. '설계도서와의 적합 여부'의 항목이 '유지', '변경', '인증', '미인증', '해당 없음'으로, '현행 기준과의 비교·검토'의 항목이 '개선 필요', '해당 없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체크 또는 작성합니다. 가. '유지', '변경' 항목은 해당 건축물이 최종 사용승인일 시점의 설계도서 내용대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체크하고, 해당 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 없음'에 체크합니다. 나. '인증', '미인증' 항목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과 인증으로 인하여 혜택 등을 받은 건축물로서 인증을 받았는지를 점검하여 체크하고, 기존 항목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 없음'에 체크합니다. 다. '변경', '미인증' 항목에 체크한 경우, 건축법령 및 관계 법령의 변경결과와 기준에 맞게 변경하였는지 여부 및 건축물의 성능 등을 고려하여 '개선 필요', '해당 없음' 항목을 체크합니다. 3. '종합 의견'은 '체크 항목',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및 '주요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에서 작성한 내용 등을 종합하여 전반적인 의견을 기술합니다.				

210mm×297mm(택상지(80a/㎡) 또는 중질지(80a/㎡))